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3일 ~ 4월 22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옥 수 (서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박 광 복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윤 영 춘 (공인 회계사)

결산검사 의견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등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 옥 수

검사위원 박 광 복

검사위원 윤 영 춘

목 차

I.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의 현황	1
II.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7
III. 기금의 결산	9
IV. 개선 및 권고사항	10

I.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의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 입	407,164	431,288	461,617	512,691	600,554
	세 출	350,894	365,208	392,170	430,332	510,229
	결산상잉여금	56,270	66,080	69,447	82,359	90,325
특별회계	세 입	20,492	24,036	26,109	30,642	36,476
	세 출	7,055	7,029	6,024	10,468	7,330
	결산상잉여금	13,437	17,007	20,085	20,174	29,145
계	세 입	427,656	455,324	487,726	543,333	637,030
	세 출	357,949	372,237	398,194	440,800	517,559
	결산상잉여금	69,707	83,087	89,532	102,533	119,471
기 금	전년말조성액	7,299	8,829	9,492	10,026	10,711
	당년도 증가	2,486	1,142	1,500	1,134	1,493
	당년도 사용	956	479	966	449	704
	당년말조성액	8,829	9,492	10,026	10,711	11,500

2019회계연도의 기금을 제외한 세입은 637,0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3,6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보조금이 52.9%(전년 51.5%)를 차지합니다.

기금을 제외한 세출은 517,5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75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310,791백만원으로 60%(전년 57.5%)를 차지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7.2%와 17.4%로 비슷하며 잉여금의 경우 이월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16.5%(전년 14.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당년도 1,719,610원으로 전년 1,449,180원 대비 270,430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치단체 채무계 (a=b+c+d)	15,067	13,930	11,002	7,263	-
- 공 채 b	-	-	-	-	-
- 차입금 c	15,067	13,930	11,002	7,263	-
- 채무부담행위 d	-	-	-	-	-
지방공기업 채무(e)	-	-	-	-	-
채무총합계 (f=a+e)	15,067	13,930	11,002	7,263	-

광주 서구청의 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당년도말 기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말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23,878원입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다음 지표들이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및 결과값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총예산 = 0%	25%초과	40%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상환액/일반재원 ¹⁾ = 2.4%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지방세징수액 현황	징수액/최근3년평균징수액 = 100.7%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금고잔액 현황	당년말잔고/최근3년평균잔고 = 111.9%	20%미만	10%미만

광주 서구청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지표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채무상환비 비율은 중앙에서 일괄입력하는 항목으로 아직 미집계되어 2018회계연도 수치 입력

II.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615,026	637,030	517,559	119,471
일반회계	579,322	600,554	510,229	90,325
특별회계	35,704	36,476	7,330	29,145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	40,935	4,319	17,651	8,793	47,772
일반회계	-	27,487	3,581	17,651	8,766	32,841
특별회계	-	13,449	738	-	27	14,931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37,03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15,026백만원보다 22,004백만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인 517,559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9,471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40,935백만원, 사고이월비 4,319백만원, 계속비이월 17,651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8,793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6,187백만원이 감소한 47,772백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493,416	526,795	512,691	2,715	11,389
2019년도	579,322	613,900	600,554	2,352	10,994
결산확인액	579,322	613,900	600,554	2,352	10,994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00,554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3.7%(전년 103.9%)로서 21,232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 초과수납 5,842백만원(전년 2,303백만원)과 세외수입 초과수납 5,472백만원(전년 4,311백만원), 지방교부세 초과수납 5,287백만원(전년 5,506백만원)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전년 97.3%)로 전년대비 0.5%p 증가 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363백만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9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 출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00,554	600,554	-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8년도	461,460	493,416	430,332	39,420	6,177	17,487
2019년도	539,902	579,322	510,229	48,719	9,825	10,549
결산확인액	539,902	579,322	510,229	48,719	9,825	10,549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539,902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9,420백만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산한 예산현액은 579,322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17건 120백만원, 이체는 총 244건 75,051백만원으로서 조직 개편에 기인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폭염인명피해재난지원 사업으로 10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백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전년 87.2%)에 해당하는 510,229백만원(전년 430,332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8,719백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27,487백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및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연내 미완료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액은 3,581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등의 연내 완공 불가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보조금반납금은 9,82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전년 3.5%)에 해당되는 10,549백만원(전년 17,487백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금액	차액
510,229	510,229	-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5,704	46,327	36,476	160	9,692
①의료급여기금	1,387	1,761	1,761	-	-
②주차장 운영	34,317	44,566	34,714	160	9,692
결 산 확 인 액	35,704	46,327	36,476	160	9,692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36,476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2.1%(전년 117.3%)로서 772백만원(전년 4,514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8.7%(전년 7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7%p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불납결손액이 16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율은 전년도 24% 대비 21.7%로 2.3%p 낮아졌습니다.

●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33,008	35,704	7,330	14,187	411	13,775
①의료급여기금	1,387	1,387	1,005	-	382	-
②주차장 운영	31,621	34,317	6,325	14,187	29	13,775
결 산 확 인 액	33,008	35,704	7,330	14,187	411	13,775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33,008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이월액 2,69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704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체는 총 47건 35,704백만원으로 조직개편에 기인하며,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0.5%(전년 40.1%)에 해당하는 7,330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13,449백만원, 사고이월액은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738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6%(전년 49.0%)에 해당하는 13,775백만원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내부적립금으로 편성된 13,105백만원(전년 11,838백만원), 농성동 유탄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341백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 중 216백만원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Ⅲ.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	-	26	26	-
사회복지기금	3,932	184	328	144	4,116
양성평등기금	208	△3	4	7	205
옥외광고발전기금	999	1	365	364	1,001
재난관리기금	5,040	630	670	40	5,670
식품진흥기금	532	△25	99	124	507
계	10,711	789	1,493	704	11,500

● 결산 개요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1,493백만원이며 사용액 총액은 704백만원입니다. 검사 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00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789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년도 기금 지출액은 704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IV. 개선 및 권고사항

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결손사유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

(1) 현황 및 문제점

결손사유는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관리도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납세태만의 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2) 개선권고

결손사유 중 시효소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일정 기간이 경과 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효소멸 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가 일실되지 않도록 채권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등의 분류사유도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판매용품(쓰레기봉투)의 재고관리 철저

(1) 현황 및 문제점

재고는 미래 판매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주민의 수요변동을 흡수하여 판매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판매의 흐름을 중단없이 원활하게 하여 재고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문량을 말합니다.

그러나 판매용품(쓰레기 봉투)의 재고는 149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재고 36백만원의 413%로 급격히 늘어나 재고비용의 증가로 자금운용의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개선 권고

합리적인 미래판매의 예측으로 재고유지비용과 주문비용의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여 재고조달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고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추구하여 자금의 적절한 운용과 재고비용의 최소화로 경제적 주문량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명시이월액 최소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전년도와 당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현황(특별회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명 시 이 월		비 고
	금 액	전 년 대 비	
2018년도	12,154	(-)2,799	
2019년도	40,935	(+)28,781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액이 당해연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의 수가 늘었고 정부보조금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수령한 사업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시이월액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2) 개선 권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예산이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서구청이 사업을 추진력 있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 각 사업 담당자는 사업 계획시 과거 유사사업의 소요기간을 참고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 하여,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정부보조금 사업 중 당해연도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보조금이 편성·집행되도록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정확한 보고

(1) 현황 및 문제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결산서 첨부서류)의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연초 잔액	(+)신규취득	(-)매각·폐기등	연말 잔액
2018년 결산서	6,125	594	118	6,601
2019년 결산서	6,126	3,271	59	9,339

2018년 결산서상 연말잔액과 2019년 결산서상 연초잔액이 당연히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합니다.

(2) 개선 권고

물품은 서구청의 자산으로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 보유현황과는 별개로 결산서에 그 현황이 올바르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품은 그 증감이 발생할 때마다, 수량과 금액을 장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분실·유용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재액 검증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예를 들어 1년마다) 그 실제 수량을 파악하여 장부와 일치하는지 실지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품현황을 매년 결산서에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서구청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세입과 세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함과 동시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함에도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선 권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조례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와 동시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타 구청의 경우 상기 조례를 최근 폐지하였는 바, 서구청도 조속히 조례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절차를 취해야 하겠습니다.